

식약처, 「식품위생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-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등 식의약 안심과제 추진
- 소비기한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(푸드 QR) 표시에 대한 제도적 지원, 자가품질검사의 검사 대상 및 주기 등 영업자 불편 해소 건의과제 추진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(푸드QR) 도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을 7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,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.

< 개정안 주요 내용 >

- ①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 마련 시행규칙
- ② 업종(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) 간 변경신고 규정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
- ③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 합리적 개선 시행규칙
- ④ 소비기한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(푸드 QR) 표시 제도적 지원 시행규칙
-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하위 규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

①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근거가 없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공증 등을 통해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.

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의 영문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
구분	현행	개선
인허가 서류	▲ 영업허가증·신고증·등록증 국문	▲ 기존 + 영문 추가

② 현행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

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.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구분	현행	개선
인허가 절차	▲ 폐업신고 + 신규 영업신고	▲ 변경신고
수수료	▲수수료 28,000원	▲ 수수료 9,300원

③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한다. 또한, 동일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.

현재	개선
① 대·중분류 중심 주기 설정 - 3개월마다 검사 : 93종 과자, 추잉껌, 떡류 등 - 1개월마다 검사 : 88종 병과, 대두유 등	① 식품유형별 주기 세분화 및 완화 - <u>3→6개월 주기 완화 : 21종</u> 추잉껌, 설탕, 침출차 등 - <u>1→3개월 주기 완화 : 8종</u> 마가린, 희석초산 등

④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(푸드QR)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.

적용 대상	주요 개선내용
식품제조·가공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차단에 이용되는 국제표준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한 경우 -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위반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(영업정지, 품목 제조정지, 품목류 제조정지)을 1/2 범위 경감
기타 식품 판매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·보관한 경우로서,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등 예방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-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영업정지 처분(7일)을 시정명령으로 처분
자유업 (편의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비기한 경과 식품등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·보관한 자 중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- 해당 표시 제품으로 인한 1차 과태료(30만 원)를 경고로 처분

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의 내용으로 「식품 위생법」이 개정(법률 제21299호, 2025. 12. 30. 공포, 2026. 12. 31. 시행) 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자료·정보의 요청 범위,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,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종동 (043-719-2010)
		담당자	연구관	홍정미 (043-719-2032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정 (043-719-2030)
협조 부서	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	책임자	과 장	박진국 (043-719-28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정 (043-719-2852)
협조 부서	식의약인공지능전환추진단	책임자	과 장	김익상 (043-719-4021)
		담당자	사무관	이지영 (043-719-4022)